

2026. 8.

덴마크 기계판독가능한 TDM 권리유보는 기계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부고등법원 2026.5.12. 결정 BS-55572/2025-OLR)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덴마크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은 2026년 5월 12일 결정에서 웹사이트의 데이터·개인정보처리 방침에 HTML 형식으로 표시된 자연어 권리유보가 DSM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권리유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¹⁾ 이 결정은 제1심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Kæresag)으로서, 제1심에서 패소한 데이터 분석사업자 ReData A/S가 항고인이 되고, 임대정보 플랫폼 운영자 BoligPortal A/S가 피항고인이 된 사건이다.

제1심인 해사 및 상사법원(Sø- og Handelsretten)은 BoligPortal이 웹사이트에 HTML 형식으로 표시한 자연어 권리유보를 유효하고 기계판독가능한 것으로 보아 ReData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처분을 명하였다. 그러나 동부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기계판독가능한 권리유보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인 자동화 처리과정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한 방식”(machine-readable means)을 단순한 디지털 형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 요건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권리유보의 기술적 형식과 효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BoligPortal과 ReData의 데이터 분석사업

1) Østre Landsret, Beschl. v. 12.5.2026 – BS-55572/2025-OLR, GRUR-RS 2026, 9935 – TDM-Vorbehalt in HTML.

BoligPortal은 2002년 설립되어 덴마크에서 임대주택 광고 및 중개 플랫폼(boligportal.dk)을 운영하면서 임대물건 정보를 수집·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시장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Data Insights 서비스도 운영하였다. ReData 역시 부동산 분야의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BoligPortal의 임대광고에서 매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scraping)하여 자체 분석서비스에 이용하였다. 양사는 공개 임대광고에서 유래한 동일한 기초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나, ReData는 유료서비스인 Data Insights에만 포함된 분석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법원은 ReData가 boligportal.dk 또는 그 배후의 API²⁾에서 8개 종류의 데이터 항목을 추출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BoligPortal의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 권리의 보호대상인지, ReData의 반복적 추출이 이를 침해하는지, 그러한 추출이 TDM 제한사유로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2) 권리유보의 표시

BoligPortal은 웹사이트 하단에 링크된 데이터·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자사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해당 권리유보는 HTML 형식으로 표시되었으나 내용 자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연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권리유보가 HTML 형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침 제4조 제3항이 요구하는적절한 방식, 예컨대 기계판독가능한 방식의 유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다.

(3) 제1심 결정과 항고

BoligPortal은 ReData의 데이터 수집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집·이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제1심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권리유보의 유효성을 모두 인정하여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제1심에서 패소한 ReData가 동부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므로, 항고심에서는 ReData가 항고인(Kærende)의 지위를 가진다. ReData는 BoligPortal이 보호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존재와 보호기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연어로 작성된 권리유보는 기계판독가능한 방식의 권리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되었다. 첫째, BoligPortal의 데이터베이스가 덴마크 저작권법 제71조 및 데이터베이스 지침(Directive 96/9/EC)에 따른 독자적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대상인지, 이를 위해 데이터의 취득·검증·표시에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 어떠한 데이터 집합이 보호대상인지, 기존 보호기간이 존속하는지 또는 상당한 변경으로 새 보호기간이 개시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였다.

2) 여기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웹사이트가 화면 표시를 위하여 배후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스크래핑은 웹페이지의 HTML 코드를 해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과, 웹사이트 자신이 이용하는 배후 API에 직접 접속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나뉜다.

둘째, ReData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더라도 DSM 지침 제4조의 상업적 TDM 제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지, 특히 BoligPortal이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여기서 자연어 문장이 HTML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판독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자동화된 수집시스템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스크래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에도 경쟁법상 일반조항(마케팅법 제3조 제1항)으로 동일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의 결정

(1)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의 만료와 새로운 보호기간의 개시 여부

법원은 2002년에 성립한 원래 임대정보 데이터베이스의 15년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미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BoligPortal은 2002년에 설립되었고 임대플랫폼 데이터베이스도 그 시점에 성립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71조 제4항의 15년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만료되었으며, BoligPortal도 이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은 상당한 새로운 투자로 별개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성립하였는지, 또는 동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무관의 견해에 따른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갱신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보호기간이 개시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사건에서 법무관이 동적 데이터베이스(dynamische Datenbank)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면,³⁾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위한 상당한 투자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새로운 보호기간이 개시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단순히 새로운 임대광고가 계속 등록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보호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투자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변경과 관련되는지, 임대정보 플랫폼과 Data Insights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지, ReData가 항목을 추출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그 추출이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가처분절차에서 새 보호기간의 개시와 침해를 충분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TDM 제한사유의 적용

법원은 설령 ReData의 추출이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DSM 지침

3) CJEU, Judgment of 09.11.2004, C-203/02 -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u. a. 경마 주최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래한 경주정보를 마권업자가 이용한 사안으로, 사법재판소는 제7조 제1항의 취득 투자가 기존 요소의 탐색·집적에 투입된 수단을 뜻할 뿐 요소 자체의 생성에 투입된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보호기간에 관한 제10조 제3항을 다른 제11 예비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Rn. 96). 따라서 동적 데이터베이스(dynamische Datenbank)에 관한 판단은 Stix-Hackl, 법무관의 견해(GA Stix-Hackl, Schlussanträge vom 08.06.2004, C-203/02, Rn. 147 ff.)에만 나타난다. 법무관은 계속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당한 변경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새 보호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rolling" 독자적 권리로 표현하였으나(Nr. 151), 제10조 제3항 요건의 입증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Nr. 155).

제4조를 이행한 덴마크 저작권법 제11b조의 TDM 제한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저작권법 제71조 제5항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 제11b조를 준용). 이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TDM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권리자가 이용을 명시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유보한 경우에만 제한사유가 배제된다. 따라서 BoligPortal의 권리유보가 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결정적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가처분절차에서는 BoligPortal이 가처분신청 당시 보호받아야 할 현재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문제이므로, 법률 제680호에 의해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된 제11b조를 포함한 신청 당시의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11b조 시행 이전에 ReData가 종전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3) 기계판독가능성의 의미

법원은 DSM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성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가 아직 없고 최종적 해석에는 선결재판 제청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제청 없이 스스로 지침을 해석하였다. 법원은 지침 전문 제18항을 고려할 때⁴⁾ 기계판독가능성이 권리유보 문구가 컴퓨터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읽히거나 추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권리유보는 첫째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스크래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동화 처리시스템이 그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기계판독가능성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자동화된 처리과정에서 실제 규범적 지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4) HTML에 자연어로 표시된 권리유보의 효력

이 사건 권리유보는 HTML 형식으로 제공되어 프로그램이 문장을 기술적으로 수집·판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연어로 작성되어 통상적인 자동화된 스크래핑 프로그램이 그 의미를 권리유보로 해석하고 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BoligPortal의 최고데이터책임자도 ChatGPT·Google·Meta 등이 데이터 수집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자연어 문구의 수집을 금지하는 권리유보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권리유보가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HTML 형식의 권리유보가 언제나 기계판독가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정의 논리에 따르면 HTML 문서 안에 있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이 권리유보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적 표시가 사용된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어떠한 메타데이터나 기술표준이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자연어 유보가 HTML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4) DSM 지침 전문 제18항은 콘텐츠가 인터넷상에서 공중에 접근가능하게 된 경우 기계판독가능한 수단에 의한 권리유보가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웹 사이트의 메타데이터와 이용약관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일방적 선언 등 다른 수단이 적절할 수 있다고 한다. 동 항이 이용약관을 언급하고 있으나, 동부고등법원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이를 권리유보가 담길 수 있는 위치의 예시로 이해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는 그 형식이 기계적으로 해석 가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부족하고, 자동화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해석·준수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권리유보가 명시적인지, 수정된 문구가 실제로 언제 게시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5) 마케팅법상 일반조항

법원은 문제된 스크래핑이 저작권법 제71조 또는 제11b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를 마케팅법 제3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한 권리유보가 없어 제11b조의 TDM 제한사유가 적용되므로, ReData의 스크래핑을 마케팅법상 위법행위로 보아 금지할 수도 없었다.

3. 평가 및 의의

1) 기계적 인식과 기계적 해석의 구별

이 결정의 핵심 의의는 “기계판독가능성”을 단순한 기계적 인식가능성과 구별한 데 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문자는 대부분 HTML 등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기계적 인식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어 문구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지침 제4조 제3항이 충족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형식적 접근을 배척하고, 기계판독가능성에 기계적 탐지뿐 아니라 기계적 의미해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2) TDM 권리유보에 대한 기능적 접근

이 결정은 권리유보의 효력을 파일형식이나 문구의 존재가 아니라 자동화 처리과정에서의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HTML로 작성되어 있는가”보다 “통상적인 크롤러가 이를 TDM 거부 의사로 인식하고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권리자에게 단순한 자연어 경고문을 넘어 자동화 시스템이 인식·해석할 수 있는 기술적 옵트아웃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메타데이터나 robots.txt 등이 그 수단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법원은 어느 기술표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3) 독일 및 네덜란드 판례와의 연계

법원은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Kneschke v. LAION 판결⁵⁾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Howards Home 판결⁶⁾을 참조하였다. 이 결정과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로 두 유럽 상급법원이

5)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 .

6)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Persuitgevers/HowardsHome 판결(2024. 10. 30., C/13/737170 / HA ZA 23-690, ECLI:NL:RBAMS:2024:6563). 언론기사 모니터링사업자가 RSS 피드를 통하여 신문발행사의 기사를 수집·요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DSM 지침 제4조를 이행한 네덜란드 저작권법상 TDM 제한사유의 옵트아웃이 기계판독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침해를 부정하였다.

기계판독가능성에 관하여 같은 방향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⁷⁾ Kneschke v. LAION 사건에 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상고심 구두변론이 2026년 9월 3일 예지정되어 있어서 BGH가 EU 회원국 최고법원 중 최초로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시사점

이 사건의 직접적 대상은 생성형 AI 학습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데이터 분석이므로, 이를 AI 학습데이터에 관한 판결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AI 학습자료 수집 역시 대규모 웹 크롤링과 TDM 제한사유가 문제되므로, 이용약관이나 데이터정책에 “AI 학습을 금지한다”는 자연어 문구만을 기재한 경우 기계판독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어떠한 기술표준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5) 결정의 한계

이 결정은 본안이 아닌 가처분절차에 관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한 판단도 권리 부존재의 확정이라 아니라 소명 부족에 관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 선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선결재판을 제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였으므로, 향후 유럽사법재판소가 달리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이 결정은 “HTML은 기계판독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HTML 안에 자연어로 기재된 유보가 통상적인 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참고 자료

- 덴마크 동부고등법원 결정문 전문 (<https://www.domstol.dk/media/mm2dm5xv/bs-55572-2025-olr.pdf>).
- Kühn, Keine Maschinenlesbarkeit eines in HTML formulierten Rechtevorbhalts gegen Text- und Datamining, GRUR-Prax 2026, 411.
- Østre Landsret, Beschl. v. 12.5.2026 - BS-55572/2025-OLR, GRUR-RS 2026, 9935 - TDM-Vorbehalt in HTML.
- 박희영,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Kneschke vs. LAION), 이슈리포트 2025.12.

7) Vgl. Kühn, Keine Maschinenlesbarkeit eines in HTML formulierten Rechtevorbhalts gegen Text- und Datamining, GRUR-Prax 2026, 411.